

#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4,585,442	12,737,563
일반회계	402,736,555	12,082,097
특별회계	21,848,887	655,467
기타특별회계	21,848,887	655,46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01,732	111,052
의료급여특별회계	1,336,528	40,096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823,561	54,707
주택사업특별회계	25,000	75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4,823	2,845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330,168	99,905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195,541	5,866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6,282,294	188,469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15,396	462
장흥담관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484,333	74,53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559,511	76,78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4,2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및 포상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